

2면·3면 실전 노동법 /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4면 노동안전 칼럼 /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5면 독자 투고 / 무엇을 위해 우린 골병이 드나

6면 전국 소식 / 서울, 인천, 대구, 대전·충북, 전북, 부산·양산, 광주·전남

7면 이주노동자 / 금속 경남지부, 이주노동자 119 연대사업 협약

8면 우리네 맛집·남도소머리국밥·QR코드 광고



바지락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21년 11·12월 통합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1811-9509

바지락은 사람들



“이제 여름 다음은 바로 겨울인가 봐.” 10월인데도 후덥지근하더니 갑작스레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지만, 오늘은 인천 부평공단에서 출근 시간 선전전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기온 6℃. 출근하는 공단 노동자들의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운 날은 주머니 깊숙이 꽂은 손이 선뜻 나오지 않아 더 힘듭니다. 그래도 추운데 수고가 많다는 온기 섞인 말 한마디에 영차영차 기운을 내뿜습니다. 인천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로, 〈바지락〉으로, 권리 찾기 수첩으로 공단 곳곳을 자주 찾은 보람이 있는 듯합니다. 인천의 공단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합원입니다.

달라지는 임금명세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 항목별 금액·계산 방법 반드시 기재해야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주면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임금액과 맞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정확한 임금명세를 알려주는 대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항목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

을 개정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모든 사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근기법 48조 2항). 한 사람만 고용해도,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해도 모두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사내전산망, 이메일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7조의2 1항). 임금 총액, 노동일수, 총노동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노동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며,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합니다.

▶ 2면으로 이어짐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시행, 이렇게 대처합시다

[실전노동법]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 노동자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시행령 27조의2 2항).

사업주는 사용 기간 30일 미만의 일용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때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근로기준법 63조에서 정한 농림축산업 노동자,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해당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법 116조 2항 2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하기로 했습니다(시행령 60조 관련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가령,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를 빠뜨려 지급한 행위가 한 번이면 과태료 20만 원, 최근 1년간 두 차례 발생한 경우 2회 차 행위 때 30만 원을 부과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 미지급	30	50	100
기재사항 일부 누락 사실과 다른 경우	20	30	50

노동자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

임금 명 세 서				
지급일 : 0000-00-00				
성 명			생년월일(또는 사번)	
부 서			직 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기본급		소득세	
	연장근로수당		주민세	
	가족수당		국민연금	
	정근수당		고용보험	
	식대		건강보험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상여금		장기요양보험	
	명절상여금		노동조합비	
	근속수당		환급/기타공제	
	성과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21	238	25	5	4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25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	5시간×통상시급×0.5			
휴일근로수당	4시간×통상시급×1.5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4.5%			
고용보험	과세대상임금×0.8%			
건강보험	과세대상임금×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1.52%			

금명세서 서면 지급의무를 법에 명시한 만큼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받을 때마다 사업주의 계약 이행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 요구와 확인은 필수

첫째,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노동청에 신분 노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근로계약 등과 다르거나,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근거를 요구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합니다.
셋째, 임금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의무를 명시했으나, 임금대장처럼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같은 분쟁상황에서 사업주가 노동청 등에 제출한 임금대장 뿐 아니라 노동자가 보관한 임금명세서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하고 꼭 보

관해야 합니다. 사내전산망이나 이메일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받으면 출력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서면 지급의무를 명시했어도 일부 사업주들은 관행대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임의로 항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갑자기 근로계약을 바꾸자고

한다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다면 절대 바로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나 가까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사례를 제보 받고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임금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쓰여 있어도 액수와 계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 ‘노동자가 평상시 받는 1일 치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실제 받은 월급 :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 치, 해당 연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치.
 - ③ 받기로 확정했으나 받지 못한 금액 (단,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포함)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1달이라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즉 2개월간의 임금총액을 2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

-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 급여항목 중에서 ①정기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 분기별 지급 상여금, 격월 지급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

- 직급여, 실업급여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 기본급 성격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하지만,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 ① 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
 - ②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능력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중 포함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복리후생 성격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중 포함하는 부분(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연도	최저임금에 산입 않는 월 상여금		최저임금에 산입 않는 복리후생비	
	규정	금액	규정	금액
2020년 (1,795,31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359,062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89,766원
2021년 (1,822,48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273,372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54,674원
2022년 (1,914,44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191,444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38,288원

산업재해 신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안전 칼럼] 산재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 노동조합과 함께 바꿉시다

“회사는 산재라면 죽일 놈처럼 봅니다.” 이런 말을 지난여름에 들었습니다.

꽤 큰 회사에 다니는데도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처리하려면 눈치가 보이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왜 이렇게 산재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확실한 사실은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며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가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산재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자기관리를 못 하거나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그런 환경을 만들고 방치한 회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병든 사람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안전보건공단은 ‘바보 같이 죽는 방법 VR 시리즈’를 자료실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개인이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 것이라는 전형적인 ‘노동자 책임론’이지요. 결국,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뿐이 아닙니다. 많은 노동자가 자신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고, 현재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비정규직·이주노동자도 포함합니다. 좁게 해석한 ‘업무’의 범위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 사업장에서 쉬는 시간 동안 입은 상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거라 산재가 안 될 줄 알았다”라는 노동자가 많고, “작은 부상이니까 내 돈으로 치료하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회사의 눈

치 주기, 대놓고 산재 신청 못 하도록 막기, 징계 위협하기 같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어렵게 산재신청을 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산재는 다릅니다. 정부나 회사가 알아서 산재 승인 절차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왜 산재 인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증거도 피해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의학 소견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공단이 만든 산재보험소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상해나 질병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정부,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가족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합니다. 산재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보까지 사고는 17일, 근골격계질병은 116.4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05.6일, 정신질병은 181.8일, 직업성 암은 33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질환인 암은 거의 1년을 기다려야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비와 생계비는 오롯이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피해인데, 산재 신청 과정에서 왜 회사의 역할은 보이지 않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처벌로는 산재 신청을 ‘공상처리’로 은폐하는 사업주의



관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처지에서 적극적인 은폐보다, 회사의 방관 또는 비협조가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아무 강제력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온전히 치료받고 무사히 현장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권리는 알아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의 주체가 지키고 쟁취할 때 비로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해왔습니다.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으로 함께한다면 가능합니다.

[독자투고] 무엇을 위해 우리 골병이 드나



언제부터였더라 ‘힘들어’란 말을 달고 산 게.

생각해보면 요즘 힘들고 지친다.

작업라인에 인원은 줄고, 줄어든 인원만큼의 일은 더 해야 하며 하루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늘 해오던 라인의 일도, 다른 곳의 지원도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등등 무리하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젠 안 아픈 관절이 없다.

병원 치료는 선택이고, 종류별 파스는 필수가 되었다.

예전엔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루 끝에 동료들과

“수고했어. 내일 봐. ㅋㅋ”

하며 남은 기운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었는데,

지금은 녹초가 되어 아픈 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나마 파스를 붙여야 내일 하루도 버틸 수 있다.

몸이 아파 서글픈 것인가, 마음이 상해 서글픈 것인가.

작업자들을 기계로 생각하는 회사를 느낄 때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도 무너진다.

작업자는 무엇을 위해 골병까지 들어가며 일을 하는가 싶다.

“빨리빨리 오늘도 많이 많이”가 아닌

“힘든 일 하느라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되길 바라본다.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효’

독자투고를
모집합니다

2021년 <바지락>에
독자 여러분의 사진과 글을
기고해주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녹초가 된 몸 곳곳에 파스를 붙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몸이야 임시방편으로 파스라도 붙인다지만, 무너진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씁쓸한 마음 한편으로 소박한 바람이 느껴지는 글과 사진이었습니다. 공단 노동자 신문 <바지락>이 소소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글과 사진 고맙습니다.

사진과 글의 주제나 분량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과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한 사진과 글은 <바지락> 기획단이 심사해 <바지락>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독자분께 80,000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접수
방법



이메일

liandai21@naver.com 으로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 소식] 서울, 인천, 대구, 대전·충북, 전북, 부산·양산, 광주·전남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국회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등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작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목표로 민주노총·금속노조 등 81개 단체가 참가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국회 기자회견 등을 벌였습니다.

인천지부 공단 선전전



인천지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천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임금과 노동시간, 법 위반 사례부터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모아 인천시에 전달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계획을 선전전을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대구지부 기자회견



대구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단 선전전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북지부 공단 선전전



대전충북지부는 기자회견과 지역·공단 선전전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부, 대전, 청주, 음성, 충주, 세종으로 권역을 나눠 바지락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북지부 기자회견



전북지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완주에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부산양산지부 기자회견·선전전



사업장이 작다고 우리의 권리까지 작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를 이슈화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광주전남지부 4개 지역 농공단지 식당 앞 선전전



광주전남지부는 담양, 나주, 화순, 장성의 농공단지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공단 구내식당으로 찾아가 <바지락>과 리플렛,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기자회견과 선전전도 벌였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주노동 119 사업단>과 사회연대사업 협약 맺어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사업 시작, 사회연대기금 지원·이주활동가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21년 사회연대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와 이주활동가, 법률활동가들이 모여 <이주노동 119 사업단>을 꾸렸습니다. 논의 끝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부는 지난 9월 6일 <이주노동 119 사업단>과 사회연대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단의 구성원이자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지구인의 정류장>에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사업은 현재 SNS 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 달간 수십 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상담사업 외에도 노동법률 카드뉴스 제작과 이주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는 <이주노동 119 사업단>과 법률·상담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에 흩어진 이주활동가들을 모아 이주노동과 관련한 법률·상담교육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이주노동자 상담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한파 특보가 내린 겨울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자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농업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수의 농업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이주노동 119 사업단>이 9월 6일 사회연대사업 협약식을 열고 있다.

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농업 이주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이를 쉬는 등 비인간 노동강도와 착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고용허가제라는 족쇄 때문에 사업장을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려면 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출국 조치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경남지부의 사회연대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합니다.

[부산양산] 노을빛 강좌 2021 하반기 프로그램

건강한 일터를 원했지만 때로 다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산재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강좌 (네이버밴드 ‘7분 순삭 노동법’ 검색) ●

- 1강(10/26 화 업로드) 내가 실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 2강(11/09 화 업로드) 허리, 어깨가 아플 때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3강(11/23 화 업로드) 아버지가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싶어요.
- 4강(12/01 수 업로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 강좌 ●

- 1강 11/24 수 19시 산업재해 보상보험 강사 : 조애진 변호사 / 법무법인 시대로
- 2강 12/08 수 19시 직장 내 괴롭힘 강사 : 김기돈 노무사 / 노무법인 나라

| 문의·신청 | ☎ 010-2269-3066, 010-6471-8211, 문자로 참가 신청

| 주최 | 금속노조 서부산지회, 노동법률센터 도토리, 노무법인 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부산노동상담소, 법률사무소 소통

[인천] ‘초대장’

오픈 카톡 채팅방 ‘부평공단 수다방’과 ‘남동공단 수다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평공단노동자누구나 #남동공단노동자누구나 #권리찾기 #무료법률상담 #사업장위법행위제보 #노동조합가입문의 #익명보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부평공단수다방 검색



부평공단수다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남동공단수다방 검색



남동공단수다방

전라도의 맛으로 움츠린 몸을 녹이자

[우리네 맛집] 차가운 날, 따뜻한 맛 <남도소머리국밥>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골목길에 작은 음식점들이 뽁뽁이 들어서 있다. 준비한 음식점 중에서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은 단연 국밥집이다. 뜨끈한 국밥은 찬 날씨에 언 몸을 녹이며, 고된 현장에서 부여잡던 허기진 배를 가득 채워준다. 골목 한 편에 자리 잡은 소머리국밥집이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팔, 팔, 팔 끓여나온 뚝배기의 하얀 국물과 푸짐한 고기는 움츠러든 몸은 물론 얼어붙은 마음마저 녹이기에 충분하다. 특히 맑고 담백한 국물을 삼킬 때면 몸 안에 흘러내리는 뜨거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있음

을 느끼게 한다. 초장에 들깨가루를 섞어 고기를 찍어 먹는 방법과 국밥과 함께 나온 밑반찬들은 전라도가 왜 음식으로 유명한지 십분 알게 한다. 몸이 움츠러든 차가운 날 전라도의 맛으로 몸을 녹이고 싶다면 금암동 골목길의 작은 음식점 <남도소머리국밥>을 추천한다.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31

※ 식당 앞은 좁은 골목이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양범식 _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QR코드 활용 꿀팁

코로나 19 세계 유행이 길어지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QR코드’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QR코드로 출입 인증하셨죠? 그동안 내 QR코드를 찍히기만 했다면, 이제 내가 QR코드를 찍어봅시다. 카톡이랑 유튜브만 하려고 스마트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는 방법]

1단계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해 후면 카메라로 설정합니다.

2단계

스마트폰 렌즈로 아래 QR코드를 비춥니다.

3단계

폰이 QR코드를 인식하면 화면 상단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4단계

알림을 누르면 QR코드 연결 링크가 열립니다.



2021년 노동자 권리 찾기 안내수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기본내용을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PDF 파일로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 <바지락> 다시 보기

- ▲ 2021년 6, 7월호 <임금 못 받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꿀팁> 등
- ▲ 2021년 8, 9월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등

지난 <바지락>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온라인으로 노동상담을 하고 싶다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 지급을 시행합니다. ‘영망진창 임금명세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신문 <이주노동자 바지락>

2021년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주변 이주노동자 동료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세요.

중국어, 미얀마어, 태국어, 벵갈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한국어로 발행했습니다.